

#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전자업계 건의서

2022. 1

## < 건의 요지 >

- ◆ '적용범위 및 표기내용' 관련 조항 신설(제9조제5항) 삭제 요청
  - \* 적용범위 확대(포장재 → 포장재 및 제품) 반대
  - \* 포장재 및 설명서에 ▲제품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, ▲플라스틱의 종류별 함유량, ▲경고문구, ▲폐기물 관리방법 표기 반대

## 1. 현황

- 우리나라는 제품·포장재에 플라스틱 종류별 분리배출 라벨을 표시\*하여 재활용률 세계 2위의 분리수거 제도 운영 중
  - \*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분리배출 표시)
-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저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, 전자산업은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강도 높은 플라스틱 감축 추진 중
  - 『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제도』('19.12.25~)에 따라 산업계는 재질·구조 기준\*을 준수하고 재질·구조 평가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고 있으며,
    - \*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(포장재의 재질·구조 기준) 제9조의3(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제도)
    - 포장기준\* 위반 제품에 검사명령, 관련 조치 및 과태료 처분\*\*,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분담금 차등화(20% 할증) 적용 중
      - \* 포장재질, 포장방법(포장공간비율, 포장횟수 등),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목표
      - \*\*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3항(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), 제41조(과태료)
  - 『전기전자제품 재질·구조 평가제도』\*('14년~)에 따라 전자업계는 매년 재질·구조 평가 수행, 재활용성을 지속 개선 중
    - \* 「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재질·구조 개선지침 등)
- 플라스틱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에 전자업계도 공감하나,
  - 추가적인 규제 도입에 앞서 기존 재활용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, 산업여건, 실제 산업현장 적용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

## 2. 건의사항 및 사유

- ①글로벌 환경정책과 부합, ②실효성 의문, ③소비자 편의성 고려 ④ 자원낭비 최소화 등의 측면에서 ▲현행 적용범위 및 표기내용 유지, ▲포장재 및 설명서에 표시정보 신설 삭제 건의

개 정(안)	건의(안)
<p>제9조(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) ① ~ ④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 ⑤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들은 포장의 겉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,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) ① ~ ④ (생략)</p> <p>&lt;삭제&gt;</p>

가. (글로벌 환경정책과 부합) 전(全) 세계적으로 합성수지 함유제품의 개별 구성 재질에 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국가는 전무함

- 글로벌 환경규제를 선도하는 유럽도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하거나, 유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서만 정보제공\*을 의무화

\* EU REACH(화학물질 등록, 평가 및 승인) 규정 제33조(완제품내 물질정보 의사소통 의무)에 의거하여 정보제공

- 더욱이, 유럽은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정 농도(0.1wt%)를 초과하는 고위험성우려물질\*에 대해서만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

\* 고위험성우려물질 목록 : <https://echa.europa.eu/candidate-list-table>

- 반면, 본 개정법률안은 모든 소비자에게 모든 합성수지 재질에 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 우려

<EU REACH 규정 제33조>

원문	번역
<p>Article 33 (Duty to communicate information on substances in articles)</p>	<p>제33조 (완제품내 물질에 관한 정보 의사소통 의무)</p>
<p>2. On request by a consumer any supplier of an article containing a substance meeting the criteria in Article 57 and iden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(1) in a concentration above 0,1 % weight by weight (w/w) shall provide the consumer with sufficient information, available to the supplier, to allow safe use of the article including, as a minimum, the name of that substance.</p> <p>The relevant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, free of charge, within 45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.</p>	<p>2.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, 제57조의 기준을 충족하고 제59조(1)에 따라 확인된 물질을 무게 비율로 0.1%의 농도를 초과하여 함유한 완제품의 모든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완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최소한 물질의 이름을 포함하여 공급자가 이용 가능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해당 정보는 요청 접수로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.</p>

**나. (실효성 의문) 포장재 및 설명서는 제품 폐기단계에서 활용도가 낮아 신설조항의 재활용률 개선효과 미미**

- 우리나라는 제품·포장재에 **플라스틱 재질 라벨**을 표시\*하여 **재활용률 세계 2위\*\***의 분리수거 제도를 운영 중이며,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는 **세계 최고 수준**

\*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분리배출 표시)

\*\*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2% (OECD국가 중 2위)

- 합성수지를 포함한 전자제품 및 주변기기 등은 플라스틱 재질 종류가 표시된 안전인증(KC인증) 라벨을 추가로 부착함\*

\*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8조(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), 「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」 부속서24의 7(표시)

- 폐전기·전자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본체 그대로 배출하여 각 제조사, 조합, 지자체의 무상수거 정책을 통해 재활용센터로 수거되고,
  - \* 근거 : 동법 제13조(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),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, 동법 제13조의2(재활용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- 재활용센터에서 분해/분류되어 재활용되므로, 포장재는 재활용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함
  - \* 근거 :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
- 설명서도 제품 구입 시 또는 사용과정에서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서, 설명서 표기정보를 제품 폐기 시까지 보유하고 활용할 가능성 낮음
- 재활용률 저하의 주된 원인은 유사 형태의 포장재에 다양한 재질 혼용, 일반인의 배출요령 숙지 미흡, 선별인력 부족 등으로 선별되지 않고 폐기되기 때문이며,\*
  - \*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'21.1.27)
-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일회용품 소재 단일화, 폐기물 처리 인프라 지원, 세제 지원 등 기반 개선이 효과적임

<재활용률 저하 요인>

구분	주요 내용
유사 형태의 포장재에 다양한 재질 혼용 (소재 단일화 필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테이크아웃 컵(페트·PP), 음식용기(페트·OTHER) : 형태는 유사하나 재질구분이 어려워 선별 불가</li> <li>• 색이 첨가된 폴리스티렌 페이퍼(PSP) : 재생원료의 품질저하 우려가 있어 선별 불가</li> <li>• 기타·복합재질(OTHER) :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선별 불가</li> </ul>
소비자의 배출요령 숙지 미흡 (홍보/계몽 필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세척하지 않아 이물질·오물 등에 오염</li> <li>• 병 뚜껑, 빨대와 같이 크기가 작은 물품의 미분리 배출</li> <li>• 불투명 비닐의 내용물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</li> </ul>
선별인력 부족 (정책/예산 지원 필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별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과다하여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매립·소각하는 실정 (미선별 잔재물 많이 발생)</li> </ul>

\* 출처 :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'21.1.27)

다. (소비자 편의성 고려) 소비자에게 꼭 필요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

○ 신설조항에서 ‘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’ 는 현행 분리배출 표시제도에 따라 제품 및 포장재에 라벨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있어 불필요

\* 근거 : 동법 제14조(분리배출 표시)

- ‘플라스틱의 종류별 함유량, 폐기물의 관리방법’ 은 소비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움

- ‘경고문구\*’ 는 제품 자체가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하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 소비자 혼란,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

\* 경고문구 : “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.”

<추가 표시정보에 대한 소비자 활용 가능성>

구분	설명
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	• 현행 분리배출 표시제도에 따라 제품 및 포장재에 <b>플라스틱 종류</b> 표기 중이므로 중복 소지 있음 (동법 제14조)
플라스틱의 종류별 함유량	• 소비자가 <b>플라스틱 함유량의 의미</b> 를 이해하기 어려움
경고문구	• 제품 자체가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하다고 오인될 우려
폐기물의 관리방법	• 현행 분리배출 라벨에 더하여 별도로 관리방법이 표시될 경우, 소비자가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움

라. (자원낭비 최소화) 포장재 및 설명서 재제작(크기 확대, 별도 용지 추가), 기존 포장재 폐기로 인한 환경부담(자원낭비) 증가 우려

○ 현행 포장재 및 설명서는 모든 정보\*를 표시할 물리적 공간 부족

\* ▲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, ▲플라스틱의 종류별 함유량, ▲경고문구(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), ▲폐기물의 관리방법

- 포장재 및 설명서 크기 확대, 별도 용지 추가, 기존 포장재 폐기 시 추가적인 자원낭비, 폐기물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

-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해 추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. 끝.